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건 축 물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하고 보고토록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67호, 2023.4.18. 시행)됨에 따라, 위임 근거조항 수정 등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위임 근거 조항 수정(안 제20조)

개정 전 법률(제18934호, 2022.6.10.)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0조 제1항을 개정 법률 제19367호(2023.4.18. 시행)의 제29조의2를 위임근거로 수정하고, 법률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영 제20조제2항은 삭제함

나.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 위임 근거 조항 수정(안 제29조)

개정 전 법률(제18934호, 2022.6.10.) 제29조를 위임근거로 하는 영 제29조 제4항제2호를 개정 법률 제19367호(2023.4.18. 시행)의 제29조의2를

위임 근거로 수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)”를 “(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제2항”을 “법 제29조의2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9조제4항제2호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9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. 1 ~ 2. (생략)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29조(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보조	제20조(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제29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. 1 ~ 2. (현행과 같음) ② <삭제> 제29조(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제29조의2----- -----
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989